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통신방식											
① 송수신기 및 그 밖의 설비	(1) 구분	(2) 기기의 명칭(모델명)			(3) 적합성 평가번호			(4) 기기의 일련번호			
	송수신기										
	수신기										
	그 밖의 설비										
② 전원 설비	(1) 구별	(2) 교류 및 직류의 구별		(3) 개수	(4) 용량	(5) 전압	(6) 상수 및 주파수		(7) 정류기		
	주전원 예비전원										
③ 안테나계	(1) 구분	(2) 형식	(3) 구성		(4) 길이 (m)	(5) 주파수 또는 주파수 범위	(6) 이득 (dBi)	(7) 높이(m)			
			편파면	지향각				해발고	지상고	노출고	
	(8) 조수 또는 기수	(9) 제조자명		(10) 제품명칭 (모델명)	(11) 급전선			(12) 안테나설치대			
					명칭 및 규격	길이(m)	감쇄율 (dB/100m)	종류	위치		
	④ 시험 안테나	(1) 종류		(2) 용량		(3) 개수		(4) 비고			
⑤ 기타											
신청인 제출 서류	1. 안테나계를 표시하는 도면(휴대용 무선설비는 제외합니다) 1부. 2. 기기배치도(휴대용 무선설비는 제외합니다) 1부.										

작성방법

1. ②란

가. (1)란: 예비전원이 있는 경우 주전원과 예비전원을 구별하여 적습니다.

나. (3)란~(5)란: 다수의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의 총 개수를 적고 용량 및 전압은 개별 전원으로 적습니다.

다. (6)란: 다수의 정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정류기의 명칭과 개수를 적고 별도의 정류기 없이 기기의 내부회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회로 명칭 또는 PSU(Power Supply Unit)로 적습니다.

2. ③란

가. (6)란: 이득은 절대이득(dBi)을 말하며, 상대이득(dBd)인 경우에는 환산하여 적습니다.

(예) 절대이득(dBi) = 상대이득(dBd) + 2.15dB

나. (7)란: 해발고와 지상고는 해면 또는 지상에서 안테나 상단까지의 최고부 높이를 적고, 노출고는 안테나설치대 밑면에서 안테나 하단까지의 높이를 적습니다.

다. (11)란

- 급전선의 명칭(모델명) 및 규격을 적습니다.

- 길이는 각 송신기의 출력단자에서 안테나 입력단자까지의 길이를 적습니다. 다만, 분파기 등의 삽입길이는 제외합니다.

- 감쇄율(dB/100m)은 100m당 감쇄값(dB)을 말하며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전선 명칭 및 규격에 따른 급전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감쇄율을 적습니다.

라. (9)란~(12)란: 고정된 위치에 설치된 무선국만 적습니다. 다만, 간이무선국과 건물 내부, 지하 주차장, 지하철, 지하상가 등에 건물 내부와 지하 공간의 음영지역 해소를 위하여 설치된 무선국은 (12)란만 적습니다.

마. (12)란

- 안테나설치대는 안테나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을 말하며 그 종류는 철탑, 강관주, 통신주, 원폴, 분산폴, 기타로 구분합니다.

(예) 철탑: 철골이나 철재 소재의 탑 형태

강관주: 주로 나대지에 강철 파이프 소재의 타워 형태

통신주: 주로 나대지에 콘크리트, 강철 소재의 전봇대 형태

원폴: 주로 건물 위에서 하나의 폴(pole) 형태의 구조물에 설치된 형태

분산폴: 주로 건물 위에서 다수의 안테나가 분산 설치된 형태

기타: 그 외의 형태

- 안테나설치대 위치는 안테나설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말하며 옥내, 옥외, 지하로 구분합니다. 다만, 안테나설치대가 여럿인 경우에는 주장치에 해당되는 안테나설치대의 위치를 적습니다.

(예) 옥내: 안테나설치대가 건물내부에 설치

옥외: 안테나설치대가 옥상, 옥탑 등 건물외부 또는 평지, 산 등 지면에 설치

지하: 안테나설치대가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 지하에 설치

3. ② 및 ③의 (9)란부터 (12)란까지는 무선국 개설신고 시 확인이 어려우면 무선국 준공신고서 제출 시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공사설계서상의 여백이 부족하거나 특히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